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0. 26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0. 26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72호)
- 상 정 : 2007. 11. 07.(제11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문필상)

가. 제안이유

2007년도에 취득·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◦ 취득대상재산(변경분)

취 득 사 유	구분	수량	면적(m ²)	예정가액 (천원)	담당부서
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 주변체육시설 및 보조경기장 조성	토지	28필지	26,601	730,729	체육지원단

다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2007년도에 취득·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,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임.
-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의 부족한 보조경기시설과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
-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시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쾌적하고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,
- 사천읍지역의 경우 잔디운동장의 사용제한으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부지를 매입하여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 내용	답변자	답변 요지
이삼수 위원	○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 시설 조성은 책자 36페이지 도면을 확인한 바 도면상 표기된 부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, 인근 주공아파트와 학교 주변까지 확대해야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.	체육지원단 체육시설 담당 정순영	○금회 제출된 안은 1단계이며,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포함된 계획을 경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출 심의 중에 있으며, 심의가 끝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
질 의 위 원	질 의 내 용	답변자	답 변 요 지
이정희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토보고서에는 사천공설운동장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을 확실히 검토하였으나 삼천포공설운동장의 경우 내용이 없음. ○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람. 	전문위원 최 진 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천공설운동장의 경우 잔디구장으로 잔디 보호를 위하여 사용제한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보조경기장 시설이 필요함을 검토보고한 것이며, ○ 삼천포공설운동장의 경우에도 보조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함.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